

충 주 시 의 회  
제115회 임시회  
2007. 5. ( )

# 조례안건심사보고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007. 5. 2	2007. 5. 2	2007. 5. 8	2007. 5. 8	도로과장

## 2. 제안설명요지

충주시 건설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장은 건설관련 시책, 건설수주량 증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체는 과당경쟁,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4조)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1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6. 11. 17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군에도 제정하도록 시달한 조례로써 지역의 건설산업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협의회운영을 규정한 조례로서 건설경기를 살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부실 지역건설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을 규정

부실 건설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볼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사용, 계약위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과 같은 제재는 할 수 있을 것임

또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때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적비율 내에서 가능할 것임

- 안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건설부 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상징적인 조항으로 현실적으로는 공사감독부서의 성실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안 제5조에서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나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이나, ‘공사 발주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 질의 :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방안이 없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 답변 : 30%의 공동도급율을 50%로 상향 조정 하도급을 입찰조건으로 넣고 관련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음  
자랑스런 건설인 인센티브는 규칙으로 정할 예정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